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4.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6월 25일, 유용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6월 26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 9. 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6. 3.23.)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가결)

제2차 국방위원회(2026. 3.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유용원의원)

현행법은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 해당 장애의 발현 및 진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퇴직 후 6개월의 기간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6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개정안은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¹⁾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보상금²⁾을 지급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신설).

1)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2) 참고자료 장애보상금 개요 참조.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정신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와 달리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검사로 밝히기가 어려우므로 발현 및 진단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아 군 복무 중 전역 이후 짧은 기간 내 장애를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정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군 복무 중 입은 정신장애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과 국가가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에 대하여 본연의 책무를 다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현행법은 군 간부에 대하여는 장애보상금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상이연금, 순직유족연금 등이 지급되나, 「군인 재해보상법」 제2조 적용범위는 의무복무를 한 병사 등에 대하여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복무로 인하여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에 해당하는 정신장애 판정을 받은 병사에 대하여 장애보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군 복무 중 발생한 외상으로 인하여 추후 PTSD 등이 발현될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며,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자의 PTSD 질환에 한정하여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수정동의한다는 입장임.

□ 따라서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개정안들의 입법취지가 타당한 측면과 함께 그 밖의 정신장애에 대하여는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공무상 인과관계 입증 곤란하여 실무상의 어려움을 제시하는 국방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하여는 퇴직 후 기한 제한 없이 장애보상금을 지급토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법 개정형식과 관련하여 제33조제3항에 별도 항을 신설하는 개정방식보다는 기존의 동조 제1항과 제2항 본문에 각각 “다만,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를 추가하는 방식이 적절해보임.

또한, 장애보상금 지급절차를 위한 하위법령 신설 등 규정 정비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부칙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개정안은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장애보상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제33조 제1항과 제2항의 단서에서 각각 해당 개정사항을 규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비용추계서

없음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음.

[붙임] 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

제안자 : 국방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3조제5항을 신설하는 개정방식 대신 장애보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33조제1항과 제2항의 각 단서에서 해당 사항을 각각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단서와 제2항 단서 신설).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고,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여 군 복무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4항”으로 한다.

다만,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안 부칙 제1조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제33조제5항”을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1. ~ 3. (생략)

②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 외의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1. ~ 3.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지
급하고, 퇴직 후 6개
월이 경과하여 군 복
무 중 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 판정을 받은 경우
에는 제1호 또는 제2
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1. ~ 3. (개정안과
같음)

[illegible]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단서 신설> ③ · ④ (생략)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	⑤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5항-----	----- ----- . 다만,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삭제> ⑤ -----제4항-----
--	---	---

항 외에 장애보상금 의 지급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u> <u>은 공포 후 6개</u> <u>월이 경과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외상 후 스트레</u> <u>스 장애 판정에</u> <u>대한 장애보상금</u> <u>지급에 관한 적</u> <u>용례) 제33조제5</u> <u>항의 개정규정은</u> <u>이 법 시행 당시</u> <u>퇴직 후 6개월이</u> <u>경과한 경우부터</u> <u>적용한다.</u>	----- ----- ----- --. 부칙 <u>제1조(시행일) -----</u> <u>-----1년--</u> ----- -----. <u>제2조(외상 후 스트레</u> <u>스 장애 판정에</u> <u>대한 장애보상금</u> <u>지급에 관한 적</u> <u>용례) 제33조제1</u> <u>항 및 제2항-----</u> ----- ----- ----- ----- -----.
--	--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고,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여 군 복무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심신장애”를 각각 “심신장애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부

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장애보상금)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애보상금 중 제4급은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33조(장애보상금) ① ----- ----- ----- ----- ----- ----- ----- ----- ----- ----- ----- ----- ----- ----- ----- ---지급하고,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여 군 복무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 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전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u>심신장애</u>: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2.5배	1. ----- ----- ----- -----<u>심신장애</u> <u>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u>----- ----- ---
2.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특수직무공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u>심신장애</u>: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1.88배	2. ----- ----- ----- ----- -----<u>심신장애 또는</u> <u>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u>----- -----
3. (생 략) ②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 외의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3.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u><단서 신설></u> ③ ~ ⑤ (생략)	<u>다만,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u> ③ ~ ⑤ (현행과 같음)
---	---